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8269
----------	------

제안연월일 : 2008. 2. 22.

제안자 : 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2007. 7. 3)에서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7. 7. 5)에서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 및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가 각각 구성됨.

나.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2007. 7. 23, 7. 24, 8. 7, 8. 24, 8. 29),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2차(2007. 9. 10, 10. 2)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와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2007. 7. 25, 8. 1, 8. 9, 8. 23, 8. 28),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2차·제3차(2007. 9. 4, 9. 5, 9. 13.)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8. 2. 21)는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와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제안(2007. 10. 2)한 안에 대하여 안경률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제18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재외국민선거권 부여에 관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각 정당의 지역의식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선거구 수를 인구등가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방안의 연구·검토에 착수할 것 및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을 부대 결의함.

2. 제안이유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약서 등을 배부·발간하도록 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연설원제도를 도입하며,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
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며, 당내경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한 경우에는 투·개표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
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
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며,

후보자 관련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병
역·납세·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
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수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부정감
시단 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수정예의 선거부정
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선거범죄 근절을 위하여 정당간부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선
거관련 각종 제도를 도입·개선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기간행물 이외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261조제4항제5호).
-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

10조의3).

- 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 사.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230조제6항 신설).
- 아.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3호).
- 자.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위탁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57조의4제2항).
- 차.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4호).

카.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의4 신설).

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8항 신설).

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하며,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

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장 등 외에 후보자의 가족과 연설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하.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 마다 5인 이내로 정함(안 제68조제1항제1호).

거.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12항 및 제82조의2제13항).

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더.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0항).

러. 인터넷언론사의 게시관·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기관으로 행정자치

부장관 이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하고,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봄(안 제82조의6제1항).

며. 언론기관 또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버.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3억원에 인구수 곱하기 2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함(안 제121조제1항제3호)

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5조의2제3항 신설).

어.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그 공개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당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안 제138조의2제2항).

저.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1조제5항).

처.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 및 제262조의2).

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9조).

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별표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定期刊行物”을 각각 “정기간행물등”으로 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定期刊行物”을 각각 “정기간행물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管轄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로, “각각 30인” 을 “30인” 으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을 “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로, “선거부정감시단” ” 을 ““선거부정감시단” ”으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

다)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목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4항제6호 후단 중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를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전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방법” 을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4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日”을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를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

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제60조의3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대주명단”을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세대주명단”으로 한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

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제4항 전단 중 “[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를 “(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되, 그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 ③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 ④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제66조제5항 본문 중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를 “가족” 으로,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을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은”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호별방문” 을 “우편발송·호별방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후보

자등이”를 “후보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를 “국회의원 지역구(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을 말한다)마다 5인 이내”로 한다.

제71조제12항 전단 중 “「방송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 중 “연설회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설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10인과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3.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제82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를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82조의2제10항 본문 중 “중계방송”을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日”을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

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2조제2항제3호다목 중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90원

제12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점자형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제13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第4項” 을 “제5항” 으로 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제138조의2제2항 중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 을 “정당의 당사와 제79조”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23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0조제3항 중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를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255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조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제65조(선거공보)제9항”을 “제65조제10항”으로 한다.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257조제2항 중 “候補者나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와 그 配偶者”를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라.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定期刊行物”을 “정기간행물등”으로 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를 “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를 각각 삭제한다.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나.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다.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라.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자

제262조제1항 중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第1項.” 을 “제230조제1항·제2항,” 으로, “候補者와 그 家族·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選舉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政黨의 幹部” 를 “후보자와 그 가족” 으로 한다.

제262조의2제1항 중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 를 “제261조제5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로 한다.

제262조의3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2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0조의3·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를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선거구역의 경계를 조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을,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서구선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때에는 종전에 발급 받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를 반환하고 새로이 그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8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확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9조(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13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45)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성동구갑선거구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가동, 금호3가동, 금호4가동, 옥수제1동, 옥수제2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성동구을선거구	왕십리제1동, 왕십리제2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송정동, 용답동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신설동, 용두제1동, 용두제2동, 제기제1동, 제기제2동, 청량리제1동, 청량리제2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이문제3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전농제3동, 전농제4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답십리제3동, 답십리제4동, 답십리제5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장안제3동, 장안제4동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목제1동, 목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수유제4동, 수유제5동, 수유제6동

강북구을선거구	미아제1동, 미아제2동, 미아제3동, 미아제4동, 미아제5동, 미아제6·7동, 미아제8동, 미아제9동, 번제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제1동, 쌍문제3동, 창제1동, 창제2동, 창제3동, 창제4동, 창제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제2동, 쌍문제4동, 방학제1동, 방학제2동, 방학제3동, 방학제4동, 도봉제1동, 도봉제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월계4동, 공릉1·3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동, 중계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응암제4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불광제3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역촌제1동, 역촌제2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홍제제4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목제5동, 목제6동, 신정제1동, 신정제2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제1동, 신월제2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제6동, 신월제7동,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강서구갑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4동, 화곡제5동, 화곡제6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발산제2동
강서구을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개봉본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구로제6동, 구로본동, 가리봉제1동, 가리봉제2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제1동, 영등포제2동, 영등포제3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제1동, 도림제2동, 문래제1동, 문래제2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본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봉천본동, 봉천제1동, 봉천제2동, 봉천제3동, 봉천제4동, 봉천제5동, 봉천제6동, 봉천제7동, 봉천제8동, 봉천제9동, 봉천제10동, 봉천제11동, 남현동, 신림제5동
관악구을선거구	신림본동, 신림제1동, 신림제2동, 신림제3동, 신림제4동, 신림제6동, 신림제7동, 신림제8동, 신림제9동, 신림제10동, 신림제11동, 신림제12동, 신림제13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제1동, 논현제2동, 압구정제1동, 압구정제2동, 청담제1동, 청담제2동, 삼성제1동, 삼성제2동, 역삼제1동, 역삼제2동, 도곡제1동, 도곡제2동
강남구을선거구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1동, 개포제2동, 개포제3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수서동, 세곡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제1동, 풍납제2동, 방이제1동, 방이제2동, 오륜동, 송파제1동, 송파제2동, 잠실제4동, 잠실제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제1동, 문정제2동, 잠실본동, 잠실제1동, 잠실제2동, 잠실제3동, 잠실제5동, 잠실제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제1동, 거여제2동, 마천제1동, 마천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제2동, 문정제1동, 장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암사제4동, 길제1동, 길제2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천호제4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중구동구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영도구선거구	영도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 기장군갑선거구	해운대구 중제1동, 우제1동, 우제2동,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해운대구 기장군을선거구	해운대구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기장군 일원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1·2동, 노원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북구을선거구	북현1동, 북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옹진군 일원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을선거구	숭의1동, 숭의2동, 숭의3동, 숭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4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문학동, 관교동
연수구선거구	연수구 일원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산곡3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 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강화군을선거구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강화군 일원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남구선거구	남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임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오치1동, 오치2동, 건국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침단1동, 침단2동,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6)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선거구	유성구 일원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경기도(지역구 : 51)	
수원시장안구 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일원
수원시권선구 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일원
수원시팔달구 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영통구 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일원
성남시수정구 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 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 선거구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 선거구	금곡1동, 금곡2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분당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 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 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 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원미구갑 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원미구을선거 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 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 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운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	양주시 일원, 동두천시 일원
안산시상록구갑 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 선거구	일동, 이동, 부곡동, 율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 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 선거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덕양구갑 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덕양구을 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일산동구 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고양시일산서구 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
의왕시과천시 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도농동, 지금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선거구	군포시 일원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파주시선거구	파주시 일원
용인시처인구 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기흥구 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일원
용인시수지구 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일원
안성시선거구 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선거구	김포시 일원
광주시선거구	광주시 일원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이천시여주군선거구	이천시 일원, 여주군 일원
양평군가평군 선거구	양평군 일원, 가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 : 8)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원주시선거구	원주시 일원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삼척시 선거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속초시고성군 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횡성군 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선거구	태백시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선거구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 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흥덕구갑 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흥덕구을 선거구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가경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 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청원군선거구	청원군 일원
보은군옥천군 영동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증평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 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괴산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0)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부성동

공주시연기군 선거구	공주시 일원, 연기군 일원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선거구	아산시 일원
서산시태안군 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 금산군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부여군청양군 선거구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홍성군예산군 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당진군선거구	당진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 11)	
전주시완산구갑 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완산구을 선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덕진구 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일원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선거구	정읍시 일원
남원시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완주군 선거구	김제시 일원, 완주군 일원
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 선거구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임실군 일원
고창군부안군 선거구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 12)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울촌면, 화양면, 화정면,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선거구	순천시 일원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선거구	광양시 일원
담양군곡성군구례 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고흥군보성군 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강진군영암 군선거구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영암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 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무안군신안군 선거구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함평군영광군장성 군선거구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경상북도(15)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 울릉군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천시선거구	영천시 일원
상주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문경시예천군 선거구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 칠곡군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군위군의성군 청송군선거구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 선거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7)	
창원시갑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창원시을선거구	반송동, 사과동, 상남동, 중앙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마산시갑선거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마산시을선거구	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회성동,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진해시선거구	진해시 일원
통영시고성군 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선거구	사천시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밀양시창녕군 선거구	밀양시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선거구	양산시 일원
의령군함안군 합천군선거구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합천군 일원
남해군하동군 선거구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산청군함양군 거창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6條(選舉權行使의 보장) ① (생략)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② · ③ (생략)</p> <p>第7條(政黨·候補者 등의 公正競爭義務) 選舉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p>	<p>第6條(選舉權行使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第7條(政黨·候補者 등의 公正競爭義務) ①----- ----- -----</p>

같다) 및 候補者를 위하여 選舉運動을 하는 者는 選舉運動을 함에 있어 이 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競爭하여야 하며,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을 支持·宣傳하거나 이를 批判·反對함에 있어 선량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第8條의3(選舉記事審議委員會) ①
 · ② (생략)
 ③ 選舉記事審議委員會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定期刊行物”이라 한다]에 게재된 選舉記事의 공정여부를 조사하

② 各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第8條의3(選舉記事審議委員會)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舉記事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記事의 내용에 관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言論仲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言論仲裁委員會는 불공정한 選舉記事를 게재한 定期刊行物を 발행한 者(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에서 “言論社”라 한다)에 대하여 그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定期刊行物を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選舉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定期刊行物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を 발행하는 때에는 選舉記事審議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등-----

-----정기간행물등-----
-----정기간행물등-----

選舉記事審議委員會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定期
刊行物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選舉記事審議委員
會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
다.

⑥ · ⑦ (생략)

第8條의4(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
道請求) ① 任期滿了에 의한 選
舉의 選舉日전 9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舉 또는 再選舉
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放送審議
委員會 또는 選舉記事審議委員
會가 設置된 때)부터 選舉日까
지 放送 또는 定期刊行物에 公
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
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政黨(中
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
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 또
는 記事掲載가 있음을 안 날부
터 10日 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

⑤ ----- 정기
간행물등 -----

-----.

⑥ · ⑦ (현행과 같음)

第8條의4(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
道請求) ① -----

----- 정기간행물등 -----

放送을 한 放送社에 反論報道의 放送을, 당해 記事를 게재한 言論社에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각각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放送 또는 記事掲載가 있는 날부터 30日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政黨,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放送에 있어서는 이를 請求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야 하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는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의 다음 發行號에 無料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 다음 發行號가 選舉日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이 배부

②-----

----- 정기간행물등 ----- 정기간행물등 -----

----- 정기간행물등 -----

----- 정기간행물등 -----

된 地域에 배부되는 「신문 등
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
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第10條의2(選舉不正監視團) ①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를
실시하는 때마다 選舉不正을 監
視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
(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
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
까지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
員會에 選舉不正監視團을 둔다.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
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의2(選舉不正監視團) ①각

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
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
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
부정감시단을 둔다.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
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
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포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한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④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⑥ 選舉不正監視團은 管轄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의 指揮를 받아 이 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證據資料를 蒐集하거나 調査活動을 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신설>

<삭제>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 (생략)

③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

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

-----30인-----

-----<단서 삭제>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선거부정감시단”-----

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第38條(不在者申告)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③ ~ ⑦ (생략)

-----.

第38條(不在者申告)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

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 ③

(생 략)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第56條(寄託金)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託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현행과 같음)

6. -----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
 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
 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
 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
 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
 공보)의 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
 력에 한한다.

⑤ ~ ⑮ (생략)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
 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
 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
 다.

1. · 2. (생략)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

 -----제60조의
 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
 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
 집, 제64조의 선전벽보, 제65조
 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
 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

⑤ ~ ⑮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
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을 포함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
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
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
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郷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② -----

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세대주명단-----

한다.

<신 설>

-----.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
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
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
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
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
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
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
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
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
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
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
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
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
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신설>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
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
료(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
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
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
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
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
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
로 작성하여 발송하되, 그 인쇄

⑧ ~ ⑩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등,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수 중 2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한다.

④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④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⑤-----가족-----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결원은-----

-----우편발송·호별방문-----

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⑥ 후보자등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제68조(어깨띠)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

-----.

⑥ 후보자가-----

⑦-----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68조(어깨띠) ①-----

② · ③ (생략)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 ①

~ ⑪ (생략)

⑫ 「방송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 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⑬ (생략)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

談)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방송법」에 따른 綜合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 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⑬ (현행과 같음)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

談) ①-----

-----다음 각 호
에 따른 연설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자등”이라 한다]은 選舉運動期間중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필요한 사항을 弘報하기 위하여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司會者 1人을 두어 候補者의 소개 또는 支援演說·對談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10인과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3.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② ~ ⑫ (생략)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規定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選舉運動期間중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候補者가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② ~ ⑫ (현행과 같음)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 ①-----

 -----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 ⑫ (생략)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⑭ (생략)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

⑭ (현행과 같음)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략)

第108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등) ① (생략)

② 누구든지 選舉日前 60日(補闕 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실

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108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선거 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
 까지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를
 投票用紙와 유사한 模型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候補者(候補
 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
 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
 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名
 義로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를
 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신설>

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
 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
 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
 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

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p>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 나. (생략)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 바. (생략) 4. · 5. (생략) ③ ~ ⑤ (생략)</p> <p>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p>	<p>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58조에 따른----- ----- ----- -----</p> <p>라. ~ 바.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 ----- ----- -----</p>
---	---

- 1. · 2. (생략)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 + (인구수 × 20원)
- 4. ~ 9. (생략)
- ② · ③ (생략)

第122條의2(選舉費用의 補填 등)

- ①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생략)
-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 3. ~ 7. (생략)
- ④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 × 90원
- 4. ~ 9.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22條의2(選舉費用의 補填 등)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1. (현행과 같음)
-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 3. ~ 7.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選舉費用을 補填한 후에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填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補填費用額중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 또는 候補者는 그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
員會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第4項 後段의 期
限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選舉와 國
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管轄稅
務署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管
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家
에 납입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
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地方自
治團體의 長이 地方稅滯納處分
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地
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
한 등) ① (생략)

② 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
에 해당 정당의 당사·정당선거

-----.

⑥ -----
----- 제5항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당의 당사와 제79조 -----

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제79
 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
 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⑤ (생략)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 ⑤ (생략)
 <신설>

⑥ · ⑦ (생략)

第24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罪) ① · ② (생략)

----- . 이 경우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
 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第24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罪) ① · ② (현행과
 같음)

략)

③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의 投票案内文을 부정하게 작성·첨부·발송하거나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 설>

<신 설>

같음)

③-----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p>1. (생략)</p> <p>2. ~ 8. (생략)</p> <p>③ · ④ (생략)</p> <p>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p> <p>가. ~ 파. (생략)</p> <p><신설></p>	<p>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조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p> <p>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p> <p>2.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p> <p>가. ~ 파. (현행과 같음)</p> <p>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p>
---	---

	<p><u>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u> <u>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u> <u>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u> <u>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u> <u>보관하지 아니한 자</u></p>
<p><u>하.</u> (생략)</p>	<p><u>거.</u> (현행 하목과 같음)</p>
<p>2. ~ 4. (생략)</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④ -----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거공보)제9항 및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p>	<p>5. -----제65조제10항----- ----- ----- ----- -----</p>
<p>6. ~ 12. (생략)</p>	<p>6. ~ 12. (현행과 같음)</p>
<p>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 (생략)</p>	<p>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p>
<p>②第81條第6項·第82條第4項·第11</p>	<p>②-----</p>

③ · ④ (생략)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 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다. (생략)

<신설>

라. (생략)

바. · 사. (생략)

3. ~ 6.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2.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 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 사.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④-----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4. (생 략)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定期刊行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⑤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5. -----
-----정기간
행물등-----

6. (현행과 같음)

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
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
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

1. (생략)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
식물을 제공받은 자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
공받은 자

나.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
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
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
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
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
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다.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
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
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p><u>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u> <u>라.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u> <u>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u> <u>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u> <u>공받은 자</u></p>
<p>3. <u>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u> <u>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u> <u>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u> <u>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u> <u>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u> <u>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u> <u>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u> <u>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u> <u>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u></p>	<p><삭 제></p>
<p>4. <u>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u> <u>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u> <u>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u> <u>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u> <u>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u></p>	<p><삭 제></p>
<p>5. <u>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u> <u>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u> <u>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u></p>	<p><삭 제></p>
<p>6. (생략) ⑥ ~ ⑨ (생략)</p>	<p>6.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p>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
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
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
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
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